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4년 12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2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87-3500, <http://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설정단위(CU: Creation Unit)라 불리는 특정단위로만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만 거래하실 수 있으며, 이 투자설명서 본문에 나오는 일부 내용(설정, 환매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ETF로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EC855]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가격 하락위험**에 노출되며, 비교지수의 변화를 일정수준 초과하도록 운용함에 따른 **액티브ETF 투자 위험** 및 **상관계수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액티브상장지수 펀드로 Solactive AG가 산출·발표하는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	0.650	0.010	1.750	0.963	99	202	311	545	1,241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4/12/31	2022/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투자신탁(%)	2024-08-02	-	-	-	-	29.00
비교지수(%)	2024-08-02	-	-	-	-	9.33
수익률 변동성(%)	2024-08-02	-	-	-	-	18.36

- (주1) 비교지수: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T-1) X 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남훈	1978	책임 (본부장)	17개	3,084	37.13	23.52	37.13	23.52	16년4개월
이천주	1971	부책임 (본부장)	17개	3,168	-	-			22년4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 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특정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특정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수에 따라 주식의 비중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시장국면 별로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 계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 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경우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 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 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 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 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 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금액을 고려하시어 이 집 합투자기구와는 별도로 환헤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 (ETF)의 보유기 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부터 배당소 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02월 20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C85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특정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거나 초과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미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절차 및 방법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25,000 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은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 (1) 상장 증권시장: 한국거래소
- (2) 상장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예정
-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 (4) 상장요건

1. 펀드규모 :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3. 기초자산 :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시장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4. 자산구성방법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 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 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 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존속기한 :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기한을 말한다)을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해야 한다.

7. 지수 등 이용계약 :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3항 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상장폐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상장폐지 요건

상장지수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폐지한다.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주1)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3)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C85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4-07-24	최초 효력발생
2024-09-26	부책임운용역 삭제(김형중 매니저)
2025-02-20	정기갱신 및 법 시행령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남훈	1978	책임 (본부장)	17개	3,084	37.13	23.52	37.13	23.52	*경력년수: 16년 4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04.01~07.07 대우증권 -07.07~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이천주	1971	부책임 (본부장)	17개	3,168	-	-			*경력년수: 22년 4개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 박사 -95.01~99.08 대우증권 연구소 -99.09~02.08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02.08~03.09 한국투자신탁운용 -03.10~20.04 삼성자산운용 -20.04~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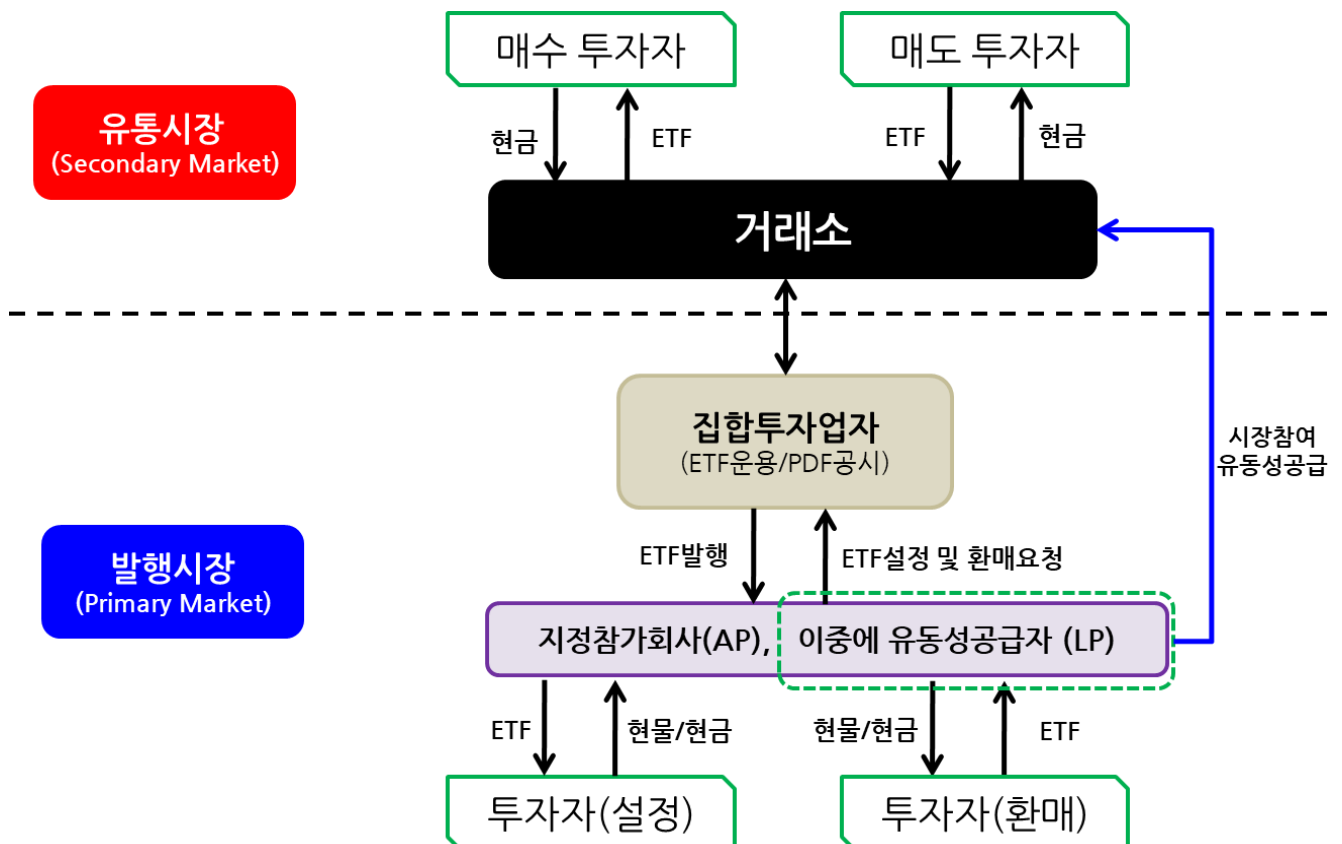
운용역	직위	운용 규모(억 원)
오남훈	책임운용역	263
이천주	부책임운용역	1,245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4.07.24~2024.09.2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olactive AG가 산출·발표하는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 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파생결합증권	10% 이하	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⑦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⑧ 증권의 대여 ^{주1)}	투자신탁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주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기타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환매조건부 매수 -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대상 중 ③ 및 ④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 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합니다.

나)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5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 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③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 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 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라.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 투자대상 ①, ②, ③, ④, ⑤, ⑥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가. 투자대상 ①, ②, ③, ④, ⑤, ⑥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 투자대상 ⑦, ⑧, ⑨의 투자한도 및 상기 나. 투자제한의 ②, ③, ④, ⑤(⑤의 라. 제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의 나. 투자제한의 ⑥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Solactive AG가 산출 · 발표하는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ETF),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의 1년 상관계수는 0.7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의 1좌당 순자산가치는 기초지수의 원화환산 후 수익률(원화환산 지수)에 연동하게 됩니다.

<비교지수>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

지수개요	일본 Tech 산업 대표기업 3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ARTIS라는 Solactive 고유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알고리즘을 통해,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종목들 중 키워드 필터링으로 일본 Tech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를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방식으로 비중을 산출합니다.										
투자전략과 산출기준 • 명칭간 일관성	일본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유동성 및 시가총액을 필터링을 통과한 종목들을 반영하여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투자전략에 부합하고 구성종목 또한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음										
산출에 이용되는 기준 • 자료의 계량 가능성	- FactSet Japan Tech Top 20 Index가 이미 2년 전부터 산출/발표되고 있음 (발표시작일 2022.5.6) - 지수 산출시 적용되는 데이터는 전부 계량화가 가능함										
유니버스 (선정기준)	- Solactive GBS Japan Investable Universe Index의 구성 종목 (ISIN: DE000SL0LHS8) - 1개월 및 6개월 동안 최소 일일 평균 거래대금 1,000만 USD 이상인 종목 - 시가총액이 최소 10억 USD 이상인 종목 - 아래의 FactSet 분류 기준 충족 <table border="1"> <thead> <tr> <th>FactSet Level</th><th>Classification</th></tr> </thead> <tbody> <tr> <td>Economy</td><td>Technology</td></tr> <tr> <td>Industry</td><td>Electrical Products</td></tr> <tr> <td>Industry</td><td>Industrial Machinery</td></tr> <tr> <td>Industry</td><td>Electronics / Appliances</td></tr> </tbody> </table>	FactSet Level	Classification	Economy	Technology	Industry	Electrical Products	Industry	Industrial Machinery	Industry	Electronics / Appliances
FactSet Level	Classification										
Economy	Technology										
Industry	Electrical Products										
Industry	Industrial Machinery										
Industry	Electronics / Appliances										

편입대상종목 (선정기준)	- 종목 선택은 ARTIS(SOLACTIVE의 고유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를 사용하여 키워드(반도체 장비 및 제조, 전자 및 IT 하드웨어,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컴퓨터 광학 및 이미징)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수 구성 종목을 선정함. 단, 과도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버퍼 규칙을 적용함. ① 점수 순으로 정렬 ② 상위 12위에 있는 모든 종목은 INDEX COMPONENTS로 선택 ③ 현 구성 종목이 상위 37위 이내이면 탈락되지 않음 ④ 이전 단계(단계 ① - ③) 이후에도 여전히 총 지수 구성요소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최상위 순위의 주식 지수에 추가되어 30개 종목수가 될 때까지 지수에 추가 - 종목 선정 후,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비중을 산출(10% Market Cap 적용)		
구성종목수	30 종목		
비중결정 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일)	정기변경일 : 연 2회 (매년 5월 / 11월 첫번째 수요일)		
CAP 비율	10%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19년 5월 7일, 1,000pt	지수 공식산출일	2024년 5월 24일
지수산출시간	중앙유럽 표준시(Central European Time) : 15:30 ~ 22:50 (한국시간: 23:30 ~ 06:50)		
지수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 상기 비교지수는 향후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적으로 ETF는 지수 수익률 추종을 위하여 “기초지수”를 선정하며 기초지수 구성종목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반면, 지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는 성과 비교를 위하여 “비교지수”를 선정하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합니다. 따라서, 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는 ETF의 “기초지수”와 지수 수익률 초과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의 “비교지수”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상당 부분을 테크 관련 일본 상장 기업 30여개에 분산투자합니다. 비교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수동적으로 편입하는 투자보다는 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일본 기업 30여개를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는 테크 분야 내 핵심 영역을 반도체 소재/부품, IT S/W 및 서비스로 구분하여 영역 별로 분산투자를 추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에 근거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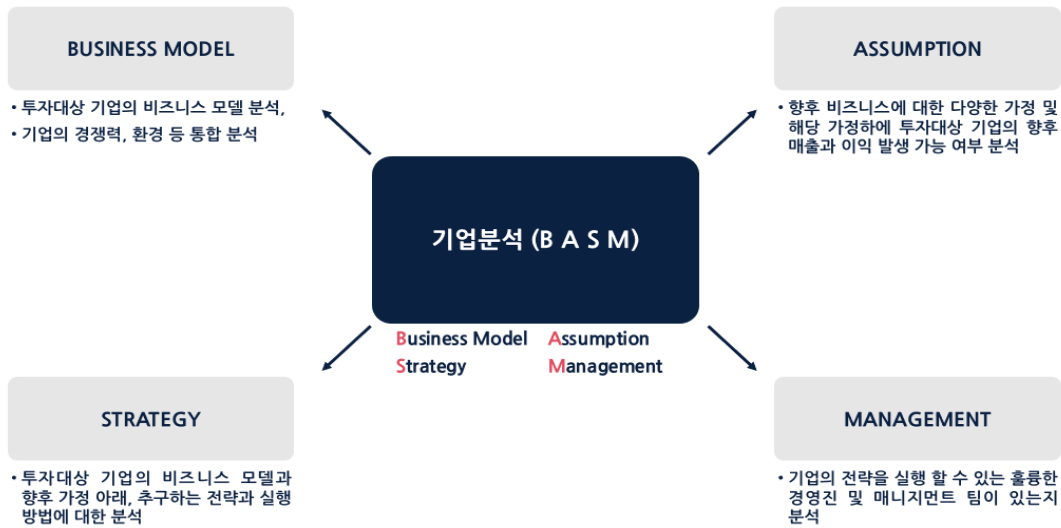
〈핵심 투자 영역〉



〈투자전략〉

- 구조적 성장/경기 순환과 변화/합리적 가격에 기반한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에 선별 투자
- 기업분석 원칙(BASM)을 바탕으로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 및 내부 경쟁력을 평가하여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

구분	투자 전략
구조적 성장	✓ 혁신적인 기술에 초점을 둔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선도적인 기업에 투자 ✓ 시장 지배력 혹은 성장 강도가 강화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 ✓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과 시장 지배력을 위해 활발한 R&D 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
경기 순환과 변화	✓ 주기적 순환을 보이는 테크 섹터 내 변화를 포착 ✓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며 자본 집약도가 낮은 경기 민감주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하락 리스크 최소화 추구
합리적 가격	✓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구



- 포트폴리오 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 편입 종목별 리스크 및 성과에 대해 매일 수시 모니터링
 - 시장 상황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기(월간) 및 수시(필요시) 리밸런싱 수행
 -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의 1년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

■ 위험관리

- 추적오차 관리방안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경우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갖추고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거래소 개장시간에 주식처럼 거래되며, 상장 주식들로 구성된 자산구성내역(PDF)의 평가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설정, 환매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환매 발생 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하여 자산 구성내역(PDF)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도 낮습니다.
- 환위험 관리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테크 산업 발전에 따라 손해가 예상되는 영역 및 그에 부합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으로, 이러한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는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의 변화,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olactive AG 가 발표하는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위험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서는 투자금액을 고려하시어 이 집합투자기구와는 별도로 환헤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하므로 일반적인 시장지수 추종 ETF에 비해 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특정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ETF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경우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특정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수에 따라 주식의 비중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시장국면 별로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국거래소의 영업일 차이에 따른 실시간순자산가치(iNAV) 왜곡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해외거래소의 영업일을 따르므로 한국거래소와의 영업일 차이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가장 최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 데, 각 국가의 휴일 및 영업일 차이로 해외거래소가 개장하지 않음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연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집합투자 기구의 기준가격이 기초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ETF의 기준가격에 기초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를 계산함에 있어, 해외 거래소의 휴장일에 따라 그 산출되는 가격이 실제 기초자산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자는 실제 기초자산의 가격과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중거래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 개장중에는 원화대비 일본(JPY)통화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추정 순자산가치가 변동되고 이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신탁의 가격도 변동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자 활동제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시간과 다른 시간대에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 수단 또한 한국과의 개장시간이 다른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 투자신탁이나 유동성공급자는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국 외 주식시장개장 전 또는 휴장, 폐장시간에는 유동성공급자의 원활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스프레드 확대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시간과 다른 시간대에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 수단 또한 한국과의 개장시간이 다른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만약 금융위기나 기타 사건들로 인해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이와 연동하여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의 유동성공급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으며, 휴일이나 해외거래소의 시스템 문제 등 특정일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ETF의 유동성공급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외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에 매도 청산하거나, 상장폐지 시점의 NAV기준으로 분배 받게 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 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 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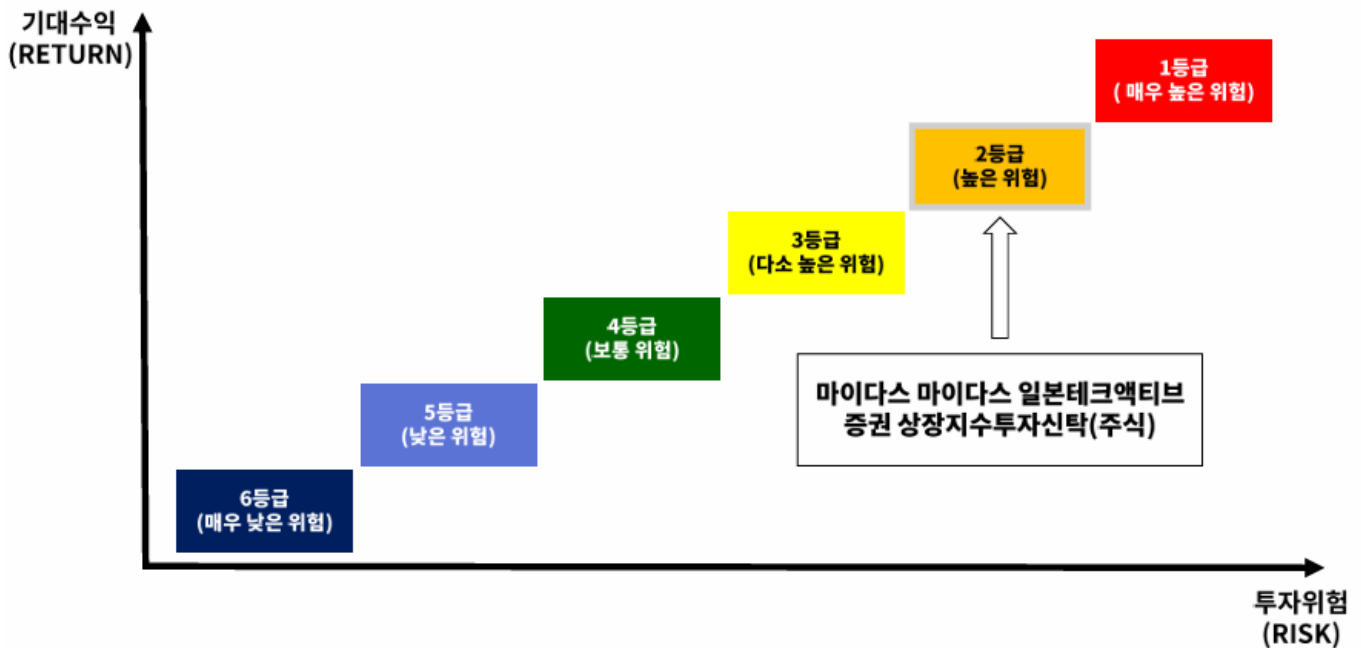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산의 형평성을 해치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및 매매·평가손익, 채권투자시 매매·평가 손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약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게 되며,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인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위험자산인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별도 환혜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하락 및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손실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이 투자위험 등급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①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인투자자에 한하며,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납부금 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금전에 의한 납입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5,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25,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설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2) 설정단위(Creation Unit)

-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5,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25,000좌 또는 그 정배수(25,000좌, 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신탁계약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3) 정산금액(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① 정산금액산출: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신탁금 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②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③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함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 익일에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등

(4) 수익증권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수익증권 설정청구의 효력〉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당일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신탁계약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⑥ 제 5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①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설정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자산 (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 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 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설정일 (T+2일)

-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 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정일(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T-1일	T일	T+2일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설정청구일	설정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 청구	정산금액 존재 시 정산,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 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이체) -투자자 계좌에 수익증권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 (한국거래소 등)	설정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확정된 설정 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부확인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1) 환매방법

①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25,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 개인의 경우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환매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증권 환매

-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 투자신탁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 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⑪ 제10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 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6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6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영업일 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6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6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6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⑬ 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①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환매청구일 (T일)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을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③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2일)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일 익일 종가기준으로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 환매청구일 당일 발표한 납입자산내역(PDF)의 평가액의 차액을 수정 정산금액(수정BA)으로 산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보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환매일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④ 환매일 (T+5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을 합니다.

구 분	T-1일	T일	T+2일	T+5일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환매청구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환매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수익자 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환매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한국거래소 등)	환매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 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4)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해지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해지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최초 기준가격 산정방법	최초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하여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④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⑤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

	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⑦외의 자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구분	내용
구성	대표이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장, 준법감시인, 해당 자산관련 담당대표 및 본부장
업무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평가에 관한 사항 -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 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590	매 1,4,7,10 월말 (후급)
지정참가회사 보수	0.010	
신탁업자 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20	
총 보수	0.650	-
기타 비용	0.313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963	-
동종유형 총보수	1.750	-
증권거래비용	0.092	사유발생시

주1)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8.02 ~ 2024.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19,242
금융비용	-

- *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대차거래비용, Repo거래비용,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입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투자신탁	99	202	311	545	1,24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판매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를 수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3)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 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2021년 9월 2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이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배당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회계기간 중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자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자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자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투자자는 집합투자자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자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자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액티브상장지수펀드 등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 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과표 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과표 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 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 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2024.08.02 ~ 2024.12.31)	면제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 기		
	2024.12.31		
운용자산	8,410,660,535		
유가증권	7,977,314,747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433,345,788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0,018,860		
자산총계	8,420,679,395		
운용부채	0		
기타부채	15,020,367		
부채총계	15,020,367		
원본	7,500,000,000		
수익조정금	0		
이익조정금	905,659,028		
자본총계	8,405,659,028		
운용수익	937,562,884		
이자수익	4,497,240		
배당수익	50,054,685		
매매평가차손익	874,757,058		
기타수익	8,253,901		
운용비용	29,850,524		
관련회사보수	21,546,962		
매매수수료	4,978,367		
기타비용	3,325,195		
당기순이익	907,712,360		
매매회전율	1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이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이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1 기 해당 내역 없음)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1기 해당 내역 없음)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7,598	3	0.04	-	-	-
합계	7,598	3	0.04	-	-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10,825	7,519	2,580	80	7,556	1.05	51.68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ETF 증권 집합투자기구의 동종유형(주식) 평균 매매 회전율을 의미하며, 분기별 누적 평균 매매회전율을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4.12.31		
운용자산	8,410,660,535		
현금및예치금	433,345,788		
현금및현금성자산	186,496,926		
증거금	246,848,862		
유가증권	7,977,314,747		
지분증권	7,977,314,747		
기타자산	10,018,860		
미수이자	401,277		
미수배당금	1,165,528		
선급비용	198,154		

선납세	8,200,130		
기타미수입금	53,771		
자 산 총 계	8,420,679,395		
기타부채	15,020,367		
미지급운용수수료	8,020,777		
미지급판매수수료	135,918		
미지급수탁수수료	407,811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71,859		
수수료미지급금	5,550,832		
기타미지급금	633,170		
부 채 총 계	15,020,367		
원 본	7,500,000,000		
이익잉여금	905,659,028		
자 본 총 계	8,405,659,028		
부채 및 자본 총계	8,420,679,395		
총좌수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엑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75,000		
기준가격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엑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2,415.09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4.08.02 ~ 2024.12.31		
운용수익(운용손실)	937,562,884		
투자수익	54,551,925		
이자수익	4,497,240		
배당금수익	50,054,685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438,947,353		
지분증권매매차익	3,511,709		
외환거래매매차익	346,918,673		
파생상품매매차익	1,088,516,971		
지분증권평가차익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64,190,295		
외환거래매매차손	5,645,894		

지분증권매매차손	329,222,843		
외환거래평가차손	229,321,558		
기타운용수익	8,253,901		
운용비용	29,850,524		
운용수수료	19,558,212		
판매수수료	331,423		
수탁수수료	994,416		
사무수탁수수료	662,911		
매매수수료	4,978,367		
기타운용비용	3,325,195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907,712,36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420,566.2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8/02~2024/12/31	0.375	7,506	0.425	8,480	0.05	980	0.375	8,406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4/12/31	2022/01/01~ 2024/12/31	2020/01/01~ 2024/12/31	(%)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2024-08-02	-	-	-	-	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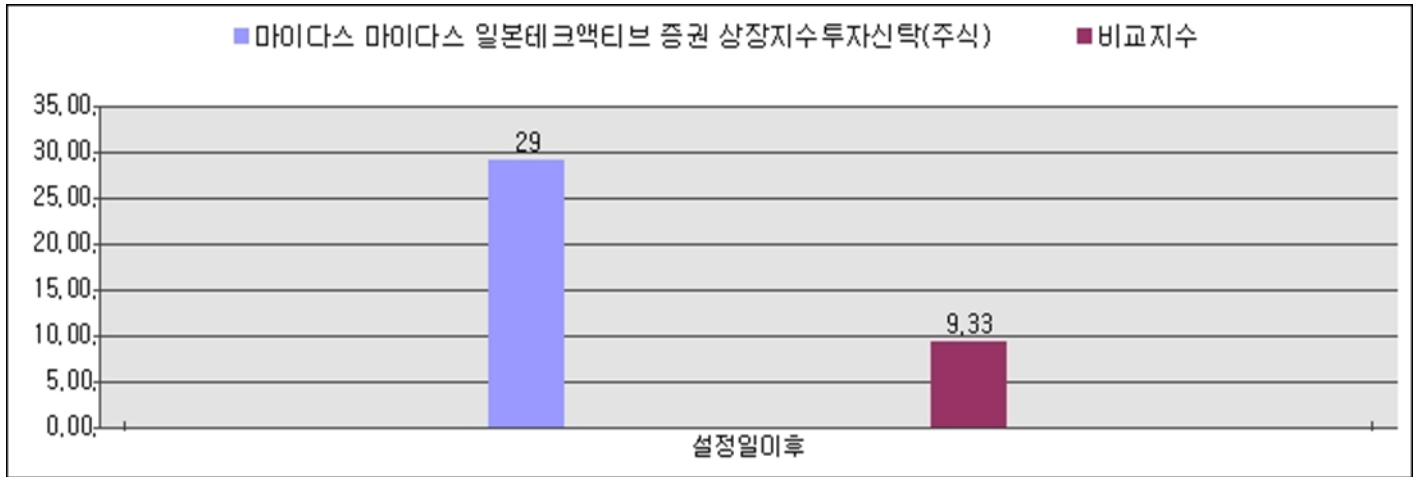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2024-08-02	-	-	-	-	9.33
수익률 변동성(%)	2024-08-02	-	-	-	-	18.36

(주 1) 비교지수 :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T-1)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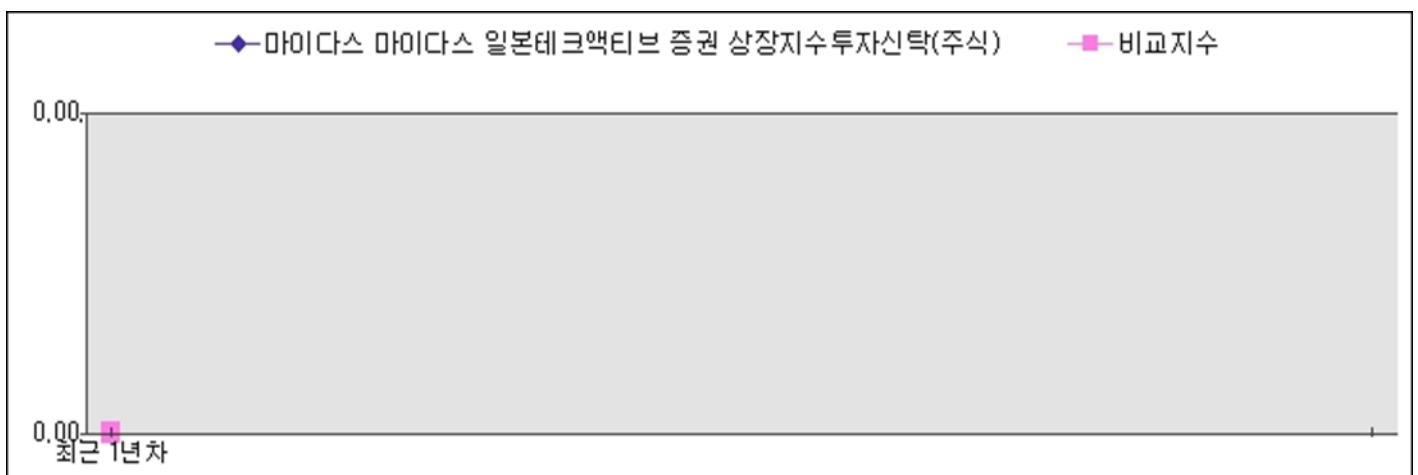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	최근 5 년차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8-02	-	-	-	-	-
비교지수	2024-08-02	-	-	-	-	-

(주 1) 비교지수 : Solactive Japan Tech Top 30 Index PR(T-1)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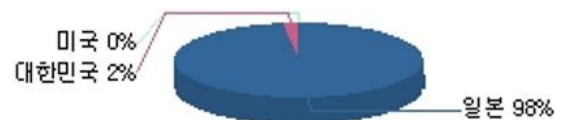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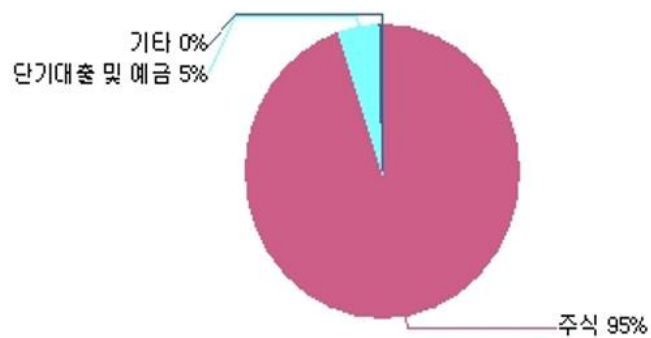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마이다스 마이다스 일본테크엑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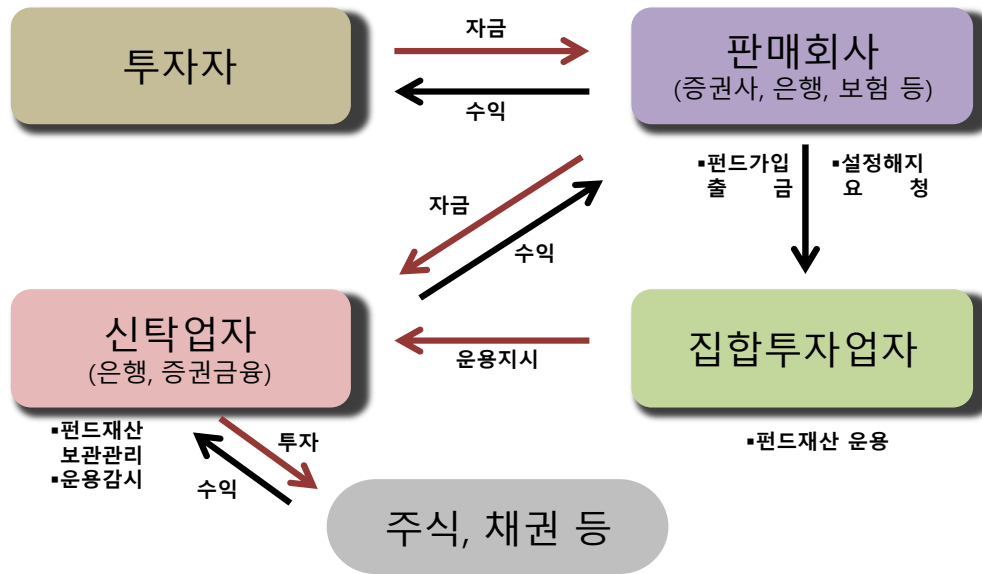
[2024.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일본	7,977	0	0	0	0	0	0	0	0	247	0	8,224
	(97)	(0)	(0)	(0)	(0)	(0)	(0)	(0)	(0)	(3)	(0)	(97.67)
대한민국	0	0	0	0	0	0	0	0	0	187	9	196
	(0)	(0)	(0)	(0)	(0)	(0)	(0)	(0)	(0)	(95.29)	(4.71)	(2.33)
미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	(0)
자산합계	7,977	0	0	0	0	0	0	0	0	434	9	8,420
	(94.74)	(0)	(0)	(0)	(0)	(0)	(0)	(0)	(0)	(5.15)	(0.11)	(1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연락처 : 02-3787-3500,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 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 억원)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7.6%)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4.03.31	'23.03.31	항 목	'24.03.31	'23.03.31
현금및예치금	321	264	영업수익	444	480
유가증권	676	602	영업비용	243	262
유형자산	423	441	영업이익	200	218
기타자산	88	96	영업외수익	21	2
자산총계	1,507	1,403	영업외비용	1	38
유동부채	51	7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0	183
고정부채	-	-	법인세비용	39	43
부채총계	51	72	당기순이익	181	140
자본금	100	100			
자본조정	-48	-49			
잉여금	1,403	1,2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자본총계	1,456	1,331			

라. 운용자산 규모

[2024.12.31 현재, 단위: 억원, 순자산 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81,176	3,731	93,155	112	774	3,871	371	2,003	-	185,192

※ 일임자산을 포함한 전체 운용자산 규모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신한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연락처	1599-8000
홈페이지	www.shinhan.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 타워1, 44층
연락처	02- 769-7800
홈페이지	fs.miraeasset.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연 락 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66
홈 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⑦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생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⑦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 264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의 합병
5.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6.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6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주식	1. 평가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정방법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	--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의 4호(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유재산 투자계획 작성 예외에 해당됨.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 ·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지정참가회사	법 시행령 제 247 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지정참가계약	이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납부금등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설정단위 (Creation Unit)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5,000 좌입니다.
설정단위의 평가가액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를 위하여 금전,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